

인천-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
(2차) 변경 실시 협약

2014. 11. 19.

국 토 교 통 부  
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

## (2차)변경 실시협약

국토교통부(이하 “주무관청” 이라 한다)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(이하 “사업시행자” 라 한다)는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(이하 “본 사업” 이라 한다.)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18일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과 2011년 4월 7일 (1차) 변경실시협약(이하 “실시협약” 이라 한다. )을 체결하였던 바, 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[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-250호(2010년 12월 23일) 및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-44호(2012년 2월 15일)] 이 공고됨에 따라 실시협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19일 다음과 같이 본 (2차)변경실시협약 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### 제 1 조 (정의)

본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### 제 2 조 (해지시지급금 산정)

실시협약의 <별표 10>(해지시지급금)을 본 변경실시협약의 <별표 1>(해지시지급금) 으로 변경한다.

### 제 3 조 (실시협약의 효력변경)

실시협약의 규정은 본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,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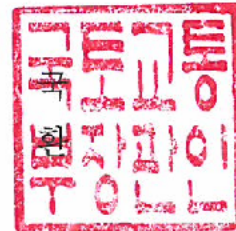
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기재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11월 19일

대한  
국토교통부장관

민  
서 승



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 
대표이사 도기훈

